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899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8995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단57563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광훈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성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6. 2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단57563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1. 3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9. 1. 31. 접수 제11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1. 가.항 중 8행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 10. 16. 상고이유서부제출로 상고기각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2. 나. 2)항 중 일부(3쪽 12행부터 4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① 2018. 3. 2. 주식회사 R와 조건부 투자(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75억 원을 대여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②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I의 주식 6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치는 2016. 5. 기준으로 평균 767,070,000원이고, ③ 2019. 2. 28.경에는 주식회사 J의 주식 1,950,000주(그중 1,750,000원주는 질권이 설정된 상태임, 액면가 5,500원)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고, 2019. 7. 15.경 C의 은행계좌 잔고가 합계 878,311,765원이 되어 자력을 회복하였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채무초과상태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위

①항의 회사에 대하여 75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②, ③항의 회사들은 모두 비상장회사로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회사들의 주식이 순자산 내지 수익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비상장주식을 C의 적극재산에 산입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진, 판사 이국현, 판사 김광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아파트 M동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스라브 지붕 20층 아파트

1층 481.42㎡

2층 467.34㎡

3층 467.34㎡

4층 467.34㎡

5층 456㎡

6층 456㎡

7층 456㎡

8층 456㎡

9층 456㎡

10층 456㎡

11층 456㎡

12층 456㎡

13층 456㎡

14층 456㎡

15층 456㎡

16층 456㎡

17층 456㎡

18층 456㎡

19층 456㎡

20층 456㎡

전유 부분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N

구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적 : 59.99 m²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K 34904.9m²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34904.9분의 34.19. 끝.

